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0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장철민·김한규·한병도

정진욱 • 박지원 • 박정현

한정애 · 진선미 · 조승래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관해서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 각종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됨.

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

여 판매·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09조제2호).

법률 제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공측량성과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하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공공측량성과를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09조제2호 중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을 "제15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② (생	지도등의 간행)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③ 공공측량성과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
	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공공측량성
	과를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
	<u>다.</u>
<u><신 설></u>	⑤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
	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0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
 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
 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
 하거나 배포한 자
- 3. ~ 12.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5조제4항</u> , 제15조의2제1
<u>항 또는 제20조제3항</u>

3. ~ 12. (현행과 같음)